

한국 물리치료 정의에 관한 고찰

송민영 · 최문희¹ · 김경모² · 이경순³

동의과학대학 물리치료과, ¹대동병원 물리치료실,
²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물리치료실, ³동주대학 물리치료과

The Consideration of Definition of Physical Therapy in South Korea

Min-young Song, PT, MS, Mun-hee Choi, PT, MS¹,
Kyoung-mo Kim, PT, BSc², Kyung-soon Lee, PT, PhD³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¹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dong Hospital

²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ongeui University Korean medical Hospital

³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ongju College

<Abstract>

Purpose :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of physical therapy in south korea. In the near future setting up the new definition of physical therapy making up for present problem and analysis of the physical therapy business.

Methods : Checking the definition of physical therapy be in use, and then we draw a new concept and definition according to the job description at ICF of WHO, WCPT, Korea Job Information System,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Analyses.

Results : The existing Definition of the korea physical therapy is focus on physical factor and rehabilitation. But, new Definition of physical therapy is contain prevention, functional limitation, therapy of disorder and be made up of definition more detailed and specialized.

Conclusion : If definition of the physical therapy out of WCPT used modify and supplement for Korean society, help globalization as well as public relations of national at the Korea physical therapy and take rights physical therapist.

Key Words : Physical therapy, Definition, Korea

I. 서 론

1945년, 물리치료가 한국에 도입된 이후 최근에

교신저자 : 김경모, E-mail: mskkm@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10년 03월 12일 / 수정접수일 : 2010년 05월 09일 / 게재승인일 : 2010년 05월 12일

이르기까지 물리치료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인해 전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양원(부산 동래 소재)에 최초로 교육제도가 만들어 졌으며, 1963년에는 정규 교육기관인 수도의 과대학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이, 1988년도에는 최초의 4년제 물리치료학과가 대구대학교에 개설되었다(배성수 등, 2008). 2010년 현재 전국 물리치료과 개설현황은 4년제 대학이 38개교, 3년제 대학이 36개교에 물리치료학과가 각각 개설되어 있으며 졸업정원은 3,280명에 이르고 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2010).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현재 2009년 물리치료사 국가시험(37회)까지 현재 38,224명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면허를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4월)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국민보건 향상과 증진 및 예방을 위해 현역에 종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0)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5~2008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물리치료 진료 환자수는 1,776만여명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건강보험적용인구(4,816만여명)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8년 한 해 10명 중 3명이 물리치료를 1회 이상 받은 셈이다. 2005년 대비 2008년 물리치료 환자수가 약 153%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08)에 따르면 22대 분류별 급역현황 중 신경계의 질환자는 233만여명,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자는 1,229만여명으로 신경계와 근골격계 환자가 주를 이루며, 위 두 분류를 제외하고도 순환기계의 질환, 호흡기계의 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등에서 물리치료가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에서 많은 국민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며, 물리치료를 흔히 온습포, 저주파치료, 초음파치료 등 단순물리치료가 물리치료의 전부라고 잘못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물리치료와 유사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물리치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한국직업정

보시스템(2010)에서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와 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물리치료 표기에 있어서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등 혼돈된 표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물리치료의 실정은 50여년의 역사를 거쳐 사회의 발전과 함께 국민보건향상에 따른 요구도가 증가되면서 교육과정과, 물리치료 업무 등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더구나 과거에는 의사만 질병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인식하고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담당자는 단지 의사의 보조자로 간주되어 왔으나, 현대사회에서 의료업이 전문·분업화하면서 의료기사 등은 의사를 보완·대체하는 각종 보건의료 영역을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걸, 2010). 그리고 한국물리치료는 세계물리치료연맹(WCPT: World Conferderation for Physical Therapy)이 요구하는 정책 권장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영역의 환자만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물리치료는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치과 등 전 의료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질환에 따른 분류에서도 근, 골격계 물리치료, 신경손상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흉부 물리치료, 산부인과 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등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2010).

그러므로 물리치료가 전문화·세분화되기 전에 설정되어진 ‘물리치료 정의(定義, Definition)’로는 현재의 물리치료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定義)하기는 어려우며 물리치료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물리치료연맹(WCPT)의 정의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한국물리치료 정의’의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물리치료 정의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물리치료 정의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한국 물리치료의 발전과 물리치료세계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물리치료사 업무분석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손상, 장애, 장애에 관련된 국제적인 용어분류를 위하여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1)를 만들어 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넛 상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분류방법이다. ICF를 사용하는 목적은 첫째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이며 두 번째는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보건 의료 전문가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ICF에서는 신체 건강의 상태를 신체 기능 및 구조(Body functions & Structures), 활동성(Activities), 참여성(Participation)으로 나누는데 이 세 부분은 환넛적인 요소(Environmental factors)와 개인적 요소(Personal factors)의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한다. 위 세 부분 중 신체 기능 및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손상(Impairment)이라고 하며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손상을 치료한다.

의사는 신체 기능 및 구조에 관련하여 생리학적인 기능(Physiologic functions)과 해부학적인 분야에서 수술적인 방법 및 약물요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를 치료한다. 의사의 업무는 주로 생명유지에 목적이 있으며 전문의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인체의 질병을 예방하며, 이미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내부장기의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의학적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한국직업정보시스템, 2010).

물리치료사는 손상과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된 환자를 진단하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중재(Intervention)하기 위한 검사를 포함한다. 물리치료 범주 내 검사들은 전반적으로 근골격계(관절가동 범위, 도수근육검사, 관절가동성, 자세 등), 신경계(반사, 호기성 능력 또는 지구력, 공기순환, 혈류순환, 호흡 등) 그리고 피부계(검진, 치료, 관리, 피하지방, 비만 케어) 검사가 있다.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기록, 평가하여 의사와 간호사,

기타 건강전문가와 치료 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그리고 활동성에 문제가 생긴 기능적 한계(Limitation)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능적 능력 평가를 위하여 자세분석, 동작분석 등 여러 가지 특수검사를 통하여 활동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치료적 중재로 손상과 기능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치료적 운동(Therapeutic exercise), 도수치료(Manual therapy), 보호기구와 장비의 처방,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전기 치료기구, 환자 교육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상해, 손상,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를 예방하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체력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증진 및 유지와 상담과 교육연구 등을 포함한다(WCPT, 2010). 참여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제한(Restriction)이라고 하는데 참여성의 부족을 해결해주는 직업군에 대한 것은 아직 정의된 것이 없다(ICF, 2010). 환자의 신체적 부분과 기능적 부분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참여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정의된 것이 없으므로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사회적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WCPT(2010)는 전 생애를 통해 노화와 손상, 질병, 환경 등으로부터 인간의 최적의 움직임과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회복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물리치료라 했으며,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의무에서는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와 평가 및 판단, 진단, 예후, 치료계획 수립을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 범주 내에서 중재 및 치료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든 중재 치료결과를 판단하고 고객들에게 자가관리를 위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물리치료사 직무기술서(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2004)에서 물리치료사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몸의 기능부전을 평가하고 치료하여 건강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전문직업인으로 평가했으며, 물리치료의 임무(duty)와 일(task), 일의요소(task element)를 전문영역에 기초를 두고 118항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 업무영역이 전문화와 세분화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정의가 필요하다(Table 1).

Table 1. Job description of physical therapist

물리치료사 직무기술서		
물리치료사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몸의 기능부전을 평가하고 치료하여 건강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전문 직업인이다.		
임무(Duty)	일(Task)	일의 요소(Task Element)
A. 평가	A1. 환자 맞이하기	A1-1 환자정보 확인하기
		A1-2 치료의뢰서 확인하기
		A1-3 환자기록지 확인하기
		A1-4 평가 준비하기
	A2. 기본 평가하기	A2-1 전신상태 평가하기
		A2-2 활력증후제기
		A2-3 연부조직 평가하기
		A2-4 근긴장도 평가하기
		A2-5 통증 평가하기
		A2-6 자세 평가하기
		A2-7 보행 평가하기
		A2-8 반사 평가하기
	A3. 근골격계 평가하기	A3-1 관절 평가하기
		A3-2 근력 평가하기
		A3-3 지구력 평가하기
		A3-4 근골격계 특수검사하기
		A3-5 근골격계 치료계획 세우기
	A4. 신경계 평가하기	A4-1 의식정도 평가하기
		A4-2 감각 및 지각 평가하기
		A4-3 운동발달 평가하기
		A4-4 운동조절 평가하기
		A4-5 뇌신경 평가하기
		A4-6 척추손상수준 평가하기
		A4-7 말초신경 평가하기
		A4-8 신경계 특수검사하기
		A4-9 신경계 치료계획 세우기
	A5. 순환호흡계 평가하기	A5-1 호흡기능 평가하기
		A5-2 객담 평가하기
A5-3 흉곽형태 평가하기		
A5-4 심장기능 평가하기		
A5-5 부종 평가하기		
A5-6 순환호흡계 치료계획 세우기		
A6. 일상생활동작 평가하기	A6-1 의사소통 평가하기	
	A6-2 침상활동 평가하기	
	A6-3 이동상태 평가하기	
	A6-4 손동작 평가하기	
	A6-5 입기 평가하기	
	A6-6 먹기 평가하기	
	A6-7 위생 평가하기	
	A6-8 일상생활동작 치료계획 세우기	

임무(Duty)	일(Task)	일의 요소(Task Element)
B. 물리치료	B1. 수 치료하기	B1-1 온습포 치료하기
		B1-2 한냉 치료하기
		B1-3 회전욕 치료하기
		B1-4 파라핀욕 치료하기
		B1-5 증기욕 치료하기
		B1-6 교대욕 치료하기
		B1-7 하버드욕 치료하기
		B1-8 풀(pool)욕 치료하기
		B1-9 특수욕 치료하기
	B2. 전기·광선 치료하기	B2-1 의욕평류 치료하기
		B2-2 이온도입 치료하기
		B2-3 단파투열 치료하기
		B2-4 초단파투열 치료하기
		B2-5 초음파 치료하기
		B2-6 간섭전류 치료하기
		B2-7 경피신경 전기자극 치료하기
		B2-8 고전압직류자극 치료하기
		B2-9 탈피신경근 전기자극 치료하기
		B2-10 신경지배근 전기자극 치료하기
		B2-11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하기
		B2-12 조직치유 전기자극 치료하기
		B2-13 은전극 전기자극 치료하기
		B2-14 자외선 치료하기
		B2-15 적외선 치료하기
		B2-16 레이저 치료하기
	B3. 기능훈련 및 운동치료하기	B3-1 수동운동 치료하기
		B3-2 능동보조운동 치료하기
		B3-3 능동운동 치료하기
		B3-4 저항운동 치료하기
		B3-5 신장운동 치료하기
		B3-6 견인 치료하기
		B3-7 중추신경계운동 치료하기
		B3-8 순환계운동 치료하기
		B3-9 호흡운동 치료하기
		B3-10 유산소운동 치료하기
		B3-11 자세훈련 시키기
		B3-12 이동훈련 시키기
		B3-13 보행훈련 시키기
		B3-14 일상생활동작훈련 시키기
B3-15 산전산후운동 치료하기		
B3-16 이완운동 치료하기		
B3-17 기계운동 치료하기		
B3-18 그룹운동 치료하기		
B3-19 보장구착용훈련 시키기		
B3-20 의지착용훈련 시키기		
B3-21 특수운동 치료하기		

임무(Duty)	일(Task)	일의 요소(Task Element)
B. 물리치료	B4. 치료적 맞사지하기	B4-1 의용 맞사지하기
		B4-2 임파부종 맞사지하기
		B4-3 결합조직 맞사지하기
		B4-4 스포츠 맞사지하기
	B5. 맨손 치료하기	B5-1 모빌라이제이션(Mobilization)
		B5-2 매니플레이션(Manipulation)
C. 교육	C1. 보호자 교육하기	C1-1 환자관리 교육하기
		C1-2 가정환경 개선 교육하기
		C1-3 안전사고 예방 교육하기
	C2. 환자 교육하기	C2-1 자가치료 교육하기
		C2-2 안전사고 예방 교육하기
	C3. 임상 교육하기	C3-1 학생 교육하기
		C3-2 수습생 교육하기
		C3-3 위탁생 교육하기
	C4. 직원 교육하기	C4-1 직무 교육하기
		C4-2 의료사고 예방 교육하기
		C4-3 감염예방 교육하기
	C5. 물리치료 교육하기	C5-1 요통 물리치료 교육하기
		C5-2 뇌졸중 물리치료 교육하기
		C5-3 뇌성마비 물리치료 교육하기
	D. 관리	D1. 인력 관리하기
D1-2 근태 관리하기		
D2. 장비 관리하기		D2-1 의료장비 관리하기
		D2-2 일반장비 관리하기
		D2-3 물품 관리하기
D3. 문서 관리하기		D3-1 공문서 관리하기
		D3-2 물리치료기록지 관리하기
E. 자기개발	E1. 전문성 향상하기	E1-1 보수교육받기
		E1-2 연수교육받기
		E1-3 학회 활동하기
	E2. 자기 관리하기	E2-1 사회봉사 활동하기
		E2-2 건강관리하기

III. 물리치료의 정의와 개념

물리치료가 한국에 소개된지 60여년 지난 현재 물리치료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 전문화 세분화 되어왔다. [표 2]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내린 물리치료 정의(定義, Definition)는 이전의 물리적 요소와 재활에 초점을 두고 내린 정의이며 현재 물리치료는 물리적 요소보다 치료적 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영역에도

관여한다(김동대 등, 2009). 물리치료의 정의는 물리치료의 업무범위를 폭넓게 만든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물리치료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다양하며 예전의 물리치료 정의와 차이점은 재활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적극참여하며 기능적 제한이나 장애에 집중한 치료를 포함하여 정의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APTA, 2010)

WCPT가 제시한 물리치료를 기술할 때는 우선적으로 물리치료의 역사와 근간을 존중하는 인식. 현재 물리치료서비스의 실체와 증가된 물리치료학 연

Table 2. Work and definition of physical therapist

구 분	물리치료 정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08)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관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2010) 물리치료사전 (정답미디어, 2004)	물리치료는 수술 및 화학요법(약물요법)이 아닌 전기,광선, 물, 공기, 소리 및 운동요법과 각종 기구 및 기계 등 물리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이를 치료목적으로 개발하여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환자를 고통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물리적인 치료법
의학용어 큰사전, (2004)	물리치료는 질환 또는 상해의 후에, 정상적 신체기능의 회복 및 재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의 힘이나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서 행하는 치료로 마사지 등의 수기, 치료적 운동, 각종에너지 이용(전기요법, 방사성요법, 초음파) 따위에 쓰이는 치료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사전적 의미	물리치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사. 온열 치료, 전기 치료, 광선 치료, 기계 치료, 마사지 따위의 물리 요법에 따른 치료를 행한다.
물리치료학개론 배성수 등	물리치료는 재활의학의 한 분야로서 질병, 절단, 손상, 등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적 운동(Therapeutic exercises), 열(Heat), 냉(Cold), 물(Water), 빛(Light), 전기(Electricity), 초음파(Ultra sound), 및 마사지(Massage), 다양한 맨손치료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라 정의
미국 물리치료협회 (APTA)	물리치료란 손상(Impairment), 기능적 제한(Functional limitation), 무능(Disability) 또는 다른 건강관련 상황을 가진 환자를 진단하고 진행과정을 알아보고 중재하기 위해 검사하며, 고안(Designing)되고 실시(Implementing)되고 수정(Modifying)된 치료적 중재로 손상과 기능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해, 손상, 기능적 제한 그리고 무능을 예방하고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체력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의 증진 및 유지를 포함한다. 상담, 교육, 연구를 포함한다.
Wikipedia (2010) 세계물리치료연맹 (2010)	물리치료는 일생동안 최대한의 움직임과 기능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유지시키며, 보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화과정, 손상 또는 질환으로 인해 움직임과 기능이 위협받는 상황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물리치료는 증진, 예방, 치료, 재활영역 내에서의 움직임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대화 시키는데 관여한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환자, 보호자,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물리치료사의 전공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움직임 가능성을 평가하고 치료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구결과를 토대로 설명. 다양한 문화, 가치, 신념,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대한 욕구, 세계의 건강관련 서비스제공, 체계간의 다양성을 인정.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적절하게 정의된 용어의 사용. 국제건강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와 같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모델과 정의를 인식. 발전하는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물리치료만이 기여할 수 있는 장점 제공. 물리치료학 교과과정의 운동과학의 중요성 인식. 치료효과가 확인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한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강조. 물리치료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 연구 및 교육의 상호의존을 인식. 사회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변화하고 물리치료학의 전공지

식이 발달함에 따라 물리치료의 정의와 기술이 계속적으로 수정,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 물리치료의 정의, 기술의 확립과 교과과정의 개발과 연구영역의 수립 보조를 위한 물리치료 기술서의 이용을 통한 물리치료의 발전을 포함 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구나 WCPT가 권장하는 “사회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변화하고 물리치료학의 전공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물리치료의 정의와 기술이 계속적으로 수정,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에서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정의의 수정과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

<표 2>에서 WCPT에서는 완전한 기능적 움직임

을 강조하여 물리치료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물리치료는 일생동안 최대한 움직임과 기능적 능력을 발달, 유지시키며, 보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화과정, 손상 또는 질환으로 인해 움직임과 기능이 힘든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리치료는 또한 증진, 예방, 치료, 재활영역 내에서 움직임 가능성을 파악하여 최대화시키며, 물리치료사, 환자, 보호자, 환자를 돌보는 의료팀 간의 상호작용, 물리치료사의 전공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움직임 가능성을 평가하고 치료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IV. 물리치료의 새로운 정의와 재정립의 필요성

앞서 물리치료사 업무분석과 한국과 세계물리치료사연맹의 물리치료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물리치료의 영문표기는 ‘Physical therapy’ 또는 ‘Physiotherapy’이다. 그중 ‘Physical’의 국어번역은 두 가지 뜻으로 첫 번째는 ‘육체(신체)’의 뜻으로 쓰이며 두 번째는 ‘물질(물리)’의 뜻으로 번역된다. Physical therapy의 ‘Physical’은 물리적이라는 용어보다는 신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울리는 번역일 것이다. 세계물리치료사연맹에서도 물리치료를 정의내릴 때 움직임(Movement)과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이라는 단어를 주요단어로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1945년, 물리치료가 한국에 도입된지 6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그 기간 동안 사회적 통념상 국민들에게 ‘물리치료’라고 지칭되고 있으므로 Physical therapy를 ‘전인치료’라고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물리치료의 정의와 그 개념만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0년 3월 15일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표가 있었다. 그 중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물리치료사는 신체움직임 및 기능과 관련된 손상·기능제한·통증·일상생활동작 및 근육 등에 대한 검사·평가분석·치료계획의 수립 및 치료, 신체적 기능제한·불구·장애

등의 예방과 신체기능의 증진·유지·회복 및 통증 치료를 위한 열·냉·물·광선·레이저·전기·초음파·진동·공기압·자극·자장·복사에너지 등을 이용한 치료, 운동치료·도수치료·신체교정치료·근육내자극치료·치료적 마사지·견인치료·기계 및 기구치료·기능훈련·지체·뇌병변 및 발달장애 재활치료와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에 환자교육과 학술적으로 인정된 물리요법적(한방물리요법 포함) 치료업무를 행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물리치료의 정의에 대한 진일보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내용적으로도 이전의 정의보다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첨가되었으며 신체움직임과 기능에 대한 언급이 수록되었으며 환자교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WCPT가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물리치료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치료’에 대한 단어 사용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한방물리요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것 또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물리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통해 세부전문영역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숙제 또한 가지고 있다.

APTA(2005)가 제시한 2020 비전은 전문자격을 가진 물리치료사(DPT)에 의해 물리치료가 이루어지며, 의뢰인 관리 및 예방, 건강을 위한 직접적 접근, 자율적 행위에 관한 권한, 근거중심치료, 전문적 기질 등 물리치료 행위, 교육, 연구에 대해 6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물리치료의 정의와 범주에 이러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물리치료 단독개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은 세계적 수준의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한국물리치료 역시 지난 65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물리치료사와 의사의 업무를 혼동하며 물리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와 의미가 비슷한 여러 대체요법들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남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물리치료의 위상이 위축되어 있다.

한국 물리치료가 더욱더 발전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관련기관의 담당자 및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WCPT에서 내린 물리치료 정의를 우리 실정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면 한국의 물리치료의 세계화 및 국민적 홍보와 물리치료사의 권리를 찾는 데 보탬이 되리라 본다.

건강의 핵심요소인 움직임(MOVEMENT)을 강조하여 ‘물리치료는 최대한의 움직임 및 기능적 능력과 관련된 손상·기능제한·통증·일상생활동작 및 근육 등에 대한 검사·평가분석·치료계획의 수립 및 치료, 신체적 기능제한·불구·장애 등의 예방과 신체기능의 증진·유지·회복 및 통증치료를 말한다. 또한 노화, 손상, 질병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움직임과 기능이 위협받을 때 역시 치료를 제공한다. 물리치료는 예방, 치료, 중재, 향상과 재활을 통해 삶의 질과 움직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준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안녕과 행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에 환자교육과 학술적으로 인정된 치료를 말한다. 그리고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와 환자, 기타의료전문가,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움직임 잠재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지식과 기술이 물리치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표 2의 내용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의학용어 큰사전, 국어사전 등에서 정의내린 내용은 앞서 제시한 WCPT의 물리치료 정의를 참고하여 수정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10. 4.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nhic.or.kr>.

김동대 등(2009). 물리치료학 개론. 서울; 정담미디어.

대통령령 제445호 중앙상이군인 정양원 직제 1951. 01.22.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http://kpta.co.kr>.

배성수 외 61인. 물리치료학개론(개정9판). 서울. 대학서림. 2010.

배성수, 박래준. 한국 물리치료의 현황과 진로.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8;10(1):223-7.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01.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01.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02.29.

이종걸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010.3.15.

전국물리치료과교수협의회. 물리치료사전. 서울: 정담미디어. 2004.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원. 물리치료사 직무기술서. 2004.

Asia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Discovering Physical Therapy. What is physical therapy. http://en.wikipedia.org/wiki/Physical_therapy. 2010.

World Confederation of Physical Therapy. The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Description of Physical Therapy. 2008.